###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 *삭기* 

제출년월일 : 1994. . .

제 출 자:대전직할시장

#### 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·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되어 조례중 관련규정을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종전에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 무원을 두었던 것을 앞으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함. (안 제10조,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< 지방재정법 시행령 >

제156조(기금의 운용, 관리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 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.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##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중 "기금출납명령관"을 "기금운용관"으로,

"기금출납공무원"을 "기금출납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 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	안
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 기금		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		
출납을 위하여 <u>기금출납명령</u>				<u>-기금운용</u>
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,		관과 기금	·출납원	,
기금출납명령관을 환경녹지		기금운용관		
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			<u>7</u>	금출납원
녹지계장으로 한다.				,
제11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		제11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		
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		지방재정법 시행령중		
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				
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				
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		기금운용관		
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				
기금출납공무원에 이를 준용		기금출납원		
한다.		·		
		<del></del>		

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吳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

#### 審查報告

1994. 5. 23. 文敎社會 委員會

#### I. 審 査 經 過

- 1. 提出日字 및 提案者: 1994. 5. 9 大田直轄市長
- 2. 回附日字:1994. 5. 9
- 3. 上程日字:第32回大田直轄市議會(臨時會)

第 3 次 文教社會 委員會 (94. 5. 23.)

上程, 審查, 議決

#### Ⅱ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:環境綠地局長)

#### 1. 提案理由

地方財政法施行令 第156條의 改正으로 地方自治團體 基金의 運用 管理擔當 會計公務員의 官職이 變更되어 條例中 關聯規定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## 2. 主要骨子

基金運用管理를 위하여 從前에는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두었던 것을 앞으로는 基金運用官과 基金出納員을 두도록 함. (案 第10條, 第11條)

#### Ⅲ. 專門委員 檢討報告要旨(專門委員:金鎭鎬)

- 本 案件은 都心內에 푸르고 쾌적한 綠地空間 確保를 위하여 그 所要財源 調達方案의 一環으로 運營되고 있는 「大田直轄 市綠地基金造成吳運營條例」의 內容中 會計官職의 名稱을 一 部 變更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
- 호 보金의 運用 및 出納事務등 會計業務의 擔當을 위하여 從前에는 「基金出納命令官」과 「基金出納公務員」을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關聯上位法인 地方財政法施行令이 一部 改正됨에 따라

이를「基金運用官」과「基金出納員」으로 會計官職의 名稱을 變更하려는 內容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.

Ⅳ. 討 論 要 旨: 없 음

V. 質疑 및 答辯要旨: 없 음

VI. 審 査 結 果: 原案대로 可決

WII. 其他 必要한 事項: 없 음